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10. 5 선고 2017가단12178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8. 29 선고 2018나214099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10. 5 선고 2017가단121786 판결

전문

사건

2017가단1217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

원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

1.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C

2.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

담당변호사 김기현

변론 종결 2018. 8. 31

판결 선고 2018. 10. 5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C은 동두천시 D 전 1,630㎡(이하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이 법원 동두천등기소 2009. 6. 17. 접수 제10111호로마친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골 및 철근공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B, F, G으로부터 포천시 H 지상에 H범으로 된 가건물 설치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발주 받았다.

나. 원고는 2009. 5. 30. B, F, G에게 2009. 6. 9.까지 이 사건 공사완료를 약속하면서 1차 확인일자인 2009. 6. 2.까지 H범 외 부품 입고가 되지 않으면 약속미이행으로간주하고, 2009. 6. 20.까지 7,000만 원을 반환하며,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.

이에 따라 원고는 2009. 6. 17. B에게 채권최고액이 8,5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.

다. 한편,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2012. 10. 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동두천등기소 접수 제17759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6, 7, 10호증,을 제1,2, 4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이하 같다)의 각 기재

2.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므로,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,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제2, 4,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,갑 제3내지 5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,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① 원고는 2009 . 5. 30. B, F, G에게 한 약속대로 H범 외 부품을 입고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자인하였고(2018. 6. 22. 제2차 변론조서 참조),다만 이후 기일연장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.

② 원고는 B를 상대로 마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였다.

그러나 위 고소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갑 제11호증 작성자인 G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않아 자신과 B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H범을 구입하여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.

3.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서영호